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644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출일자 : 2025년 3월 31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2. 제안이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이용요금 할인을 통해,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 및 병역에 대한 예우·존중 문화 확산
- '19.5.2. ~ 12.31.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 할인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 정비 및 현행화

3. 주요내용

가. 시립체육시설 입장료(제9조) 및 개인연습사용료(제10조제1호) 감면대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추가(안 제9조제3항제1호, 제10조제1호다목)

나. 조례 유효기간이 경과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할인규정 삭제(안 제9조제3항제3호, 제10조제1호다목 삭제)

다. 문구 정비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관련 할인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장기간 국가를 위해 명예로운 헌신을 일군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시립체육시설 이용 요금 할인 대상에 명시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병역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제안되었음.

나.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시설 이용요금 할인 필요성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 제39조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병역과 관련한 관계법령인 「군인사법」에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복무의 구분과 의무복무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병(兵)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복무기간에 따라 제대군인을 구분¹⁾

1)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중기복무 제대군인: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의무복무 제대군인: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취업 및 창업지원과 교육·의료·대부 지원을 각기 다르게 실시하고 있음.

< 제대군인별 지원제도 구분 >

1. 의무복무 제대군인(5년미만) 지원제도

- 군복무기간에 따라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연장, 군경력을 근무경력으로 인정(일부), 전·공상 제대군인에 대하여 무료진료

2. 중기복무 제대군인(5~9년) 지원제도

- 전문화된 직업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 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맞춤형 전직지원 서비스

3.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이상) 지원제도

가. 취업보호

- 공기업·기업체 등에 특별채용(일부 대상자에 한정)

나. 교육지원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가 감면(전역 3년 이내에만 한정)

다. 의료지원

- 보훈병원 이용시 본인부담액의 50%를 감면

라. 대부지원

- 주택구입, 임차, 사업자금, 농토구입, 생활안정, 학자금 등의 마련을 위해 대부지원

마. 주택분양

- 국토해양부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분양

바. 공공시설의 이용

- 고궁 및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시감면(전쟁기념관의 경우는 무료이며, 독립기념관은 65%, 고궁 및 능원은 50%, 국립민속박물관은 50%를 각각 감면)

사. 안장지원

- 국립호국원 안장의 경우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의 경우는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현재 정부는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제복 근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추진하고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국가의 안위를 최전선에서 책임져온 제대군인 중 1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의 존중과 예우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동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또한 정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²⁾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2024년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공립 박물관과 문화촌에 대해 관람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역시 시장의 자치사무로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립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광역자치단체 중 공공시설에 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용료 면제 조례 현황>

기준: 24.1.10.

광역시·도명	지원분야	조례명	지원대상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장기복무 제대군인	관람료 면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장기복무 제대군인	관람료 면제
	공공시설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 관리·운영 조례	장기복무 제대군인	입장료 할인

- 다만 보훈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24년 보훈대상자인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의 수는 121,033명이며, 이를 시·도 비례와 장기복무와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서울에는 약 1만2천명³⁾의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는 서울 거주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규모를 1만 명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비용추계에 있어서 감면대상이 약 20%p의 차이를 보이므로 정확한 세입감소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를 바탕으로 감면대상에 대한 세밀한 추계를 시행할 필요는 있음.

2)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2024년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보훈대상자 수: 121,033명×2024년 대한민국 총 인구 중 서울시 인구 비율: 18.2%×중장기복무제대군인 대비 장기복무 제대군인 비율: 57.1%=약 12,592명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안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10조제1호다목)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9조(입장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 ③ (현행과 같음)
1.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u>수급자</u> : 100분의 50 감액	1. -----. ----- ----- ----- ----- ----- ----- <u>수급자</u>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장기복무 제대군인</u> :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1. -----. -----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u>자</u> : 100분의 30 감액	다. ----- ----- ----- ----- <u>자</u>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장기복무 제대군인</u> : ---

○ 동 개정안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시립체육시설에 입장하는 경우 그 비

용의 100분의 50을, 개인이 사용할 때는 그 비용의 100분의 30을 감액하고자 함.

- 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시립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156조 따라 사용료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바, 사용료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례로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음.(법제처 2016. 9. 22. 의견제시 16-0260).
- 아울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조례를 입안함에 있어 관계법령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법령상의 위임 및 자치사무로서의 권한으로 시장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명시한 동 개정안은 특별히 법제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에 있어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과 어긋난 부분과 의미가 불필요한 조사 등을 수정하고 있음.
- 법제처가 발간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는 반듯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및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입안하도록 제안하고 있는바, 조례안 입안 시 본문의 내용이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시 법무담당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